ICAK 해외건설협회

KIND

해외건설사업 협력을 위한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간
업무협력 약정서

해외건설협회(이하 "ICAK"라고 한다)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라 한다)는 (이하 함께 지칭될 경우 "양 기관"이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수행 관련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약정(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ICAK와 KIND가 해외 건설시장 진출 관련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업무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협력내용 및 범위)

양 기관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① 해외건설 프로젝트 정보의 교환 및 획득을 위한 상호 협력
② 해외건설 기업 및 KIND 발굴 프로젝트에 해외건설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
③ 해외건설시장 조사 및 공동 연구
④ 해외인프라 협력거점 사무소의 상호 활용
⑤ 해외건설 시장개척단 파견 및 발굴 협력
⑥ 해외건설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관련 협력
⑦ 해외 발주처 초청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 상호 협력 및 지원
⑧ 기타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관련 홍보 및 협력, 평가위원회 상호 위촉 등 제반사항 협력

제 3조(사업성과의 활용)
양 기관은 협력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며, 대외 홍보 시에는 양 기관의 명의를 병기하여 공동의 성과물임을 밝힌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상호 협조한다.

제 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사전에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 및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6조(시행약정)
양 기관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의 상세한 범위, 방법 및 절차와 비용지급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한다.

제 7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양 기관 간 협약의 시행과 관련되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8조(효력 및 해지 또는 내용변경)
①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종료 1개월 전에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② 양 기관은 협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2월 22일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 건 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허 경 구**